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75

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 황정아·황명선·이건태

박민규・김 윤・박지혜

김남근 • 박정현 • 정을호

모경종 · 강준현 · 조인철

이훈기 • 박해철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, 수사,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,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.

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, 검찰 에 의해 국회의원·보좌진·언론인·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 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'묻지마 사찰'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 도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'영장주의'를 도입하고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,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(안 제83조 및 제83조의2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"을 "법원"으 로. "장이"를 "장은"으로. "다음"을 "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"으로. "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"을 "요청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제3항에 따른"을 "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"로, "제공 요청은"을 "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"으로, "하여야"를 "법원의 허가를 받아야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서면으 로 요청할"을 "법원의 허가를 받을"로. "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없어지면"을 "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요청한 후"로. "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" 를 "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"로 하고.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 12항까지로 하고.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"를 "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9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7 항) 본문 중 "제5항에"를 "제9항에"로 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관할법 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한다.
-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.
- ⑦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는 해당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⑧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4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,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8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통지를"을 "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지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두"를 "한"으로, "매 1회 3개 월의"를 "3개월의"로 한다.

제104조제5항제13호 중 "제83조제5항"을 "제83조제9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"제83조제7항"을 "제83조제1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・② 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 • 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법원-----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검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 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 다).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, 수사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 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---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--각 호의 자료(이하 "통신이용 자정보"라 한다)의 열람 또는 제출(이하 "통신이용자정보 제 공"이라 한다)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 ④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, 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통 따라-----

서면(이하 "정보제공요청서"라 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 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없 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요청하는 경우에는---------법원의 허가를 받아야-----. -----법원의 허가를 받을---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 한 후------그 허가를 받 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 여야----. ⑤ 제4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 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

>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 받았으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 기하여야 한다.

>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

또는 지원(군사법원을 포함한

다. 이하 같다)으로 한다.

⑦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

<신 설>

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 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.

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

보 제공을 받은 자는 해당 통
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실 등
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
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등
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
여야 한다.
⑧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4
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
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,
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
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<u> </u>
따른 요청을 받아
<u></u>

사실 여부 및 <u>제5항에</u> 따른 관 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. 다만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<u>⑧</u> (생 략)
-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 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(생 략)

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.

<u>제9항에</u>				
<u>.</u>				
<u> </u>				
<u>제9항에</u>				
① (현행 제8항과 같음)				
<u><삭 제></u>				
세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				
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(현행				
과 같음)				
②				
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				
지를				

- 1. ~ 5. (생략)
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(생략)
- 2.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: <u>두</u> 차례에 한정하여 <u>매 1회 3개월의</u> 범 위에서 정한 기간
- ④ ~ ⑧ (생 략)
- 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
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·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.
 - 1. ~ 12. (생 략)
 - 13. <u>제83조제5항</u>을 위반하여 관 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
 - 14. <u>제83조제7항</u>을 위반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

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
·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한</u>
<u>3개월의</u>
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
과 같음)
⑤
 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제83조제9항
14. <u>제83조제11항</u>

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	
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	
아니한 자	
15. ~ 17. (생 략)	15. ~ 17.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